서 울 특 별 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3707-8235~6 / 전송 3707-8249
처리부서 : 주택재개발과(별관 2동 2층) 과장 배경동 담당사무관 정병일 담당 전석기

문서번호 주재58533-2610
시행일자 1999. 9. 15 ( )
공개여부 (공개)
(경 유)
수 신 내부결재
참 조

고시공고
1999. 9. 15
제1997-
호

보존기간	영구	시 장
공개여부	공개	
부 시 장		
국 장	전 결	법무담당관 심사필
과 장		계획담당사무관
기 안 자		2 담당사무관 협조
심 사 자		심 사 일 1999. 9. 15

제 목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변경)

1. 용산구 주택 58533-854('99. 3. 2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111('93.4.17)호로 개선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0('94.4.13)호로 지구변경결정된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추가)요청되어

3. 변경신청내용에 대해 '99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1. 고시안 1부.
2. 지적현황도 1부. 끝.

(제 2 안)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제 목 : 관보게재의뢰

1.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 시

나. 게재건명 :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다. 관련법규 :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따로붙임 : 고시문 사본 2부. 끝.

원본대조필

서 울 특 별 시 장

(제 3 안)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참 조 : 주거환경과장

제 목 :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보고

1. 건설부고시 제175('91.4.9)호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1('93.4.17)호로 개선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0('94.4.13)호로 지구변경(추가)결정된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따로붙임 : 1. 고시안 1부

2. 지구변경지정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제 4 안)

수 신 : 용산구청장

참 조 : 주택과장

제 목 :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통보

1. 주택58533-854('99. 3.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귀 구에서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기 통보하오니 관계내용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계부서에 알리어 각종증명발급등 도시계획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3. 또한 변경(추가)지역은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 전에 국,공유지의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에의거 국,공유재산이 사업시행자인 용산구청장에게 무상양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고시문 및 도면 각 1부.

2. 관련부서(국,공유지) 협의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원본대조필

(제 5 안)

수　신 : 받는곳 참조

제　목 :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통보

1. 건설부고시 제175('91.4.9)호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1('93.4.17)호로 개선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0('94.4.13)호로 지구변경(추가)결정된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변경지정 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고시문 사본1부 끝

주 택 재 개 발 과 장

받는곳 : 공원녹지과장.도시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도로계획과장.

원본대조필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 호

심사	1999.9.4	제283호
담당자	법제심사방향사무관	법무담당관
송준서	전연	구보성

용산1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1. 건설부고시 제175('91.4.9)호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1('93.4.17)호로 개선계획 수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10('94.4.13)호로 지구변경 결정된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전화:3707-8236) 및 마포구 도시개발과(전화:330-262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본대조필

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증·감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	용산구 용산동2가 1번지 일대	19,555.0	20,850.4	증 1,295.4